

# 참여 요청

- 발 신 : 서울학생인권조례정착화를위한청소년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 수 신 : 교육·시민·인권 및 제 사회단체
- 일 시 : 2012년 6월 5일(화)
- 제 목 : '학생인권법제정연대'(가칭) 참여 요청
- 문 의 : 배경내(010-6214-3550), dlhredut@gmail.com

## 학생인권 법적 보장/ 학생인권조례 정착 지원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연대'(가칭) 참여를 제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정착을 위해 힘써온 단체입니다.
2.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를 앞세운 이명박정부와 보수세력의 강고한 저항과 탄압 속에 학생인권조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조례의 효력이 사실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2011년 어렵사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성사시킨 경남에서도 교육청과 의회의 장벽에 가로막혀 조례 제정이 무산되었고, 충북에서도 갖은 탄압 속에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제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배출된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나 높다 높은 지역 여론과 보수적인 교육계의 장벽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안팎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뿐더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정 자체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빛이 드나 싶었던 학생인권이 다시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률 차원에서 학생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학생인권조례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개악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에 19대 국회의 우선 입법 과제로, 올해말 대선에서 채택되어야 할 주요 교육·권정책으로 '학생인권법 제정'(구체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의미)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한 ‘학생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하고자 하니, 취지에 동의하시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동의하시는 단체는 오는 6월 일까지, 참여 여부와 담당자를 정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연락주실 곳 : 배경내(010-6214-3550) 또는 dlhredu@gmail.com

## ■ 학생인권법제정연대

### ■ 추진 배경

- 통제와 처벌 중심의 학생생활규정,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체벌, 용의복장 단속, 강제학습,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교사와 학생이 대리전을 치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을 때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도 형성될 수 있고,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배움터로 기능할 수 있다.
- 경기, 광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조례 제정 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가로막혀 있어 학생인권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경기, 광주, 서울의 경우에도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를 둘러싼 해석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학생인권 보장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회 각 부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다.

### ■ 공약 내용

- 학생인권의 법적 보장 수준을 구체화·실질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 학생인권 기준 명시, 교육당국의 책무 조항 명시, 학생자치권 강화,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 행사의 법적 요건 강화, 학생징계권 남용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교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교원 양성·연수 과정 개편, 인권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수자 학생이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과 차별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 전통적 의미의 '교권'에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는 '교권'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교사의 생활교육 전문성 향상, 업무부담 감소, 교사의 휴식과 회복 등을 지원할 입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생과 교사, 직원(비정규직 포함) 등 학교안 구성들끼리의 상호 인권 존중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주체, 지역사회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 학생 신분이 아닌 탈학교 청소년의 학습권과 인권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일터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